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0 선고 2020가단1519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확인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20. 10. 13

판결 선고 2020. 11. 10

주 문

주[-1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,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

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0239판결 참조).

한편,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,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5069 판결 참조).

이 사건 청구취지에 관하여 살펴보면,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이 원고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"특수강도 사건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."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연주

별지